

영등포구의회
제130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2007. 9. 5.



行 政 委 員 會

(專 門 委 員)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■ 개정이유

- 우리구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과 우수 인재양성과 위원회 관련조항 일부를 개정하고, 또한 법제처의 ‘알기쉬운 법령만들기’ 사업취지에 맞춰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.

■ 주요내용

- 보조기준액을 ‘자치구세의 3%범위 내’에서 ‘자치구세의 5%범위 내’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(안 제3조)
-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(안 제5조의2 신설)

-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부위원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해촉사유를 신설 규정하여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도모(안 제7조)
- 각 조문의 띄어쓰기와 단어를 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’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

■ 검토의견

- 동조례 개정 안 제3조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(한도)액을 현행 ‘해당연도 자치구세의 3%범위내’ 를 ‘자치구세 5% 범위내’ 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상향하는 것입니다.

2007년 우리구의 자치구세는 837억3천만원으로 현행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은 3%인 25억1천만원이나, 개정안 5%로 상향 조정된다면 41억 8천만원으로, 지원 기준액이 현행대비 40%로 대폭조정 되는 것입니다.

이는 서울시 자치구중 5번째로 지원금액이 크며, 또한 우리구 학생(초·중·고)1인당 교육경비 지원액은 평균8만 5천원으로 강남구, 서초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금액이 된다고 보겠습니다.

참고로 현행조례는 우리구 학생(초·중·고)1인당 지원기준이 5만1천원으로 서울시 자치구중 9번째에 해당됩니다.

교육경비 보조금을 자치구세 범위로 규정하는 것은 세원이 불안정하고 등락폭이 큰 세외수입보다, 매년 지속적이고 안정된 지원을 꾀하는 차원으로, 서울시 성동구, 마포구, 관악구도 자치구세의 5%를 기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.

보조금 확대는 우리구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이기는 하나, '07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액이 자치구세의 2%에 불과, 기존 기준액 3%를 채우지 못한 실정이고, 5%로 상향 조정시 증액된 보조금만큼 발생한 자치구세 부족분을,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.

안 제2조 제5호의 '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'은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, 안 제7조 제2항은 위원장 부재시 실질적으로 심의를 대행하는 자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차원에서, 안 제7조 제5항은 위원 해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신설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.

안 제5조의2는 동 조례 제9조 제3호에 대한 근거를 보다 구체화시킨 것으로 조례체계의 명확성을, 그밖에 안 제1조, 안 제2조 제5호와 제7호, 제7조 등은 법제처의 '알기쉬운 법령 만들기' 정비규정에 맞춰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 입법형식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7. 9. 5.

보 고 자 : 김 병 욱

따로붙임 : 한도액 자치구 비교

교육경비보조 한도액 자치구 비교

자치구세 5%(개정안)

※ 자치구세 5%로 개정했을 경우(유치원 제외)

연번	자치구명	재정자립도 (%)	학교현황		개정조례(5%) 한도액 비교			개정조례(5%) 한도액기준	
			학교수	학생수 (명)	조례 규정	지원가능액 (백만원)	순위	학생1인당 지원액(원)	순위
1	종로구	77	37	30,954	자치구세 3%	1,968	12	63,578	4
2	중 구	74	31	26,510	조례 미제정			-	
3	용산구	54	34	29,463	조례 미제정			-	
4	성동구	41	35	39,241	자치구세 5%	1,751	13	44,622	10
5	광진구	45	43	54,738	자치구세 3%	1,036	18	18,927	19
6	동대문구	41	46	48,852	구세+세외수입 3%	3,077	7	62,986	5
7	종량구	29	45	56,851	구세+세외수입 3%	1,712	15	30,114	14
8	성북구	45	57	59,396	자치구세 3%	891	20	15,001	21
9	강북구	31	31	39,913	구세+세외수입 3%	1,735	14	43,470	11
10	도봉구	39	46	56,517	구세+세외수입 2%	1,165	17	20,613	17
11	노원구	32	93	111,413	구세+세외수입 3%	2,427	9	21,784	16
12	은평구	30	55	69,549	구세+세외수입 4%	2,835	8	40,763	12
13	서대문구	44	36	42,510	구세+세외수입 3%	2,369	11	55,728	8
14	마포구	52	40	42,511	자치구세 5%	2,384	10	56,080	7
15	양천구	60	60	85,766	구세+세외수입 3%	3,327	6	38,792	13
16	강서구	44	76	82,204	구세+세외수입 5%	4,846	3	58,951	6
17	구로구	44	46	54,322	조례 미제정			-	
18	금천구	33	33	36,733	자치구세 3%	737	21	20,064	18
19	영등포구	71	43	48,880	자치구세 5%	4,186	5	85,638	3
20	동작구	48	42	49,403	자치구세 3%	911	19	18,440	20
21	관악구	37	54	61,669	자치구세 5%	1,541	16	24,988	15
22	서초구	90	47	53,085	자치구세 3%	4,692	4	88,387	2
23	강남구	87	74	81,427	자치구세 3%	7,680	1	94,318	1
24	송파구	84	74	92,728	일반회계 2%	4,929	2	53,155	9
25	강동구	53	53	68,665	조례 미제정			-	

자치구세 3%(현행)

영등포구		43	48,880	자치구세 3%	2,512	8	51,391	9
------	--	----	--------	---------	-------	---	--------	---